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20호
2.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외 13명
3. 발의일자 : 2020. 10. 15.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운영에 관한 조례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등에 적합하게 정비해 금고 지정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2.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함(안 제5조).
3. 금고의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6조).

4. 금고의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7조)
5.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6. 금고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7. 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8.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보고받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20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예규에 부합하게 규정함으로써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회계법」 제38조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2), 그리고 교육부의 「시·도교육

-
- 1)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이하 ‘교육부 예규’)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금고 규칙’)을 통해 금고지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교육부 예규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동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위임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청의 금고지정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을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3)에 따른 자치사무에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해당하며, 금고지정과 관련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지정 사무와 관련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제처 의견19-0065,2019.3.15.).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금고의 수, 안 제5조는 금고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금고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금고운용과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바. (생략)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카. (생략)

2)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관한 의견(안 제7조, 안 [별표])

- 안 제7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안 [별표]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평가기준은 교육부 예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안 [별표]의 기준 역시 교육부 예규의 평가기준 범위안에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교육부 예규와 동 조례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

항 목 ⁴⁾	교육부 예규	조례안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5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8
가-1.국외평가기관	4	4
가-2.국내평가기관	4	4
나.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7
나-1.총자본 비율(안전성)	6	6
나-2.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6
나-3.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	5
2.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7	25
가.정기예금 예치금리	7	7
나.공금예금 적용금리	6	6
다.교육청 대출금리	4	4
라.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5
마. 정기성예금 만기경과 시적용금리		3
3.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18	20
가.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	7	8
나.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5	5
다.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	22	23
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6
나.금고업무 관리능력	8	8
다.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9
5.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7	7
가.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5	5
나.교육청과의 협력사업	2	2
6. 기타사항	11	
합 계	100	100

- 다만, 평가항목 ‘3.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중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은 배점기준이 8점으로 교육부 예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바,

자칫 관내지점의 수가 정량적으로만 평가될 경우 기존 금고에 유리한 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관내지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고 지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율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금고지정을 위해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부 예규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은 교육부 예규⁵⁾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5)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다. (생략)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는 점에서 법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현재 9명인 서울시교육청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원장을 기존의 교육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그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금고 지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책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2] 금고규칙과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비교

구분	금고규칙	조례안
인원	9명	9명~12명
위원장	교육행정국장	부교육감
구성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명	1.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명	

4)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의견(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수익률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금고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이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운용 상황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 예규 및 현재 교육청의 금고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금고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시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금의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의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안 제17조제3항은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시행 2019. 8. 1.] [교육부예규 제2019-230호, 2019. 8. 1., 일부개정]

1. 총 칙

[1] 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교육비특별회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③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시·도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④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시·도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⑤ 금고약정

- 교육감과 해당 시·도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4] 금고의 수

○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 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채투자 실적(3) - 세부항목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반영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순위 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 적용시)

지 침	규칙(안) 예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칭	규칙(안) 예시
<p>1. 금융기관의 대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1. 금융기관의 대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2) - 항목추가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p> <p>다. 시·도교육청 대출금리(4)</p>	<p>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p> <p>다. 시·도교육청 대출금리(4)</p>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p> <p>※ 추가배점 불가</p>
<p>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7)</p> <p>※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p> <p>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p>	<p>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1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7)</p> <p>※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추가배점</p> <p>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추가배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업무 관리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업무 관리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라. 학교회계 관리능력(3) - 항목추가</p>
<p>5.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점)</p> <p>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5)</p> <p>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2)</p> <p>*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5.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점)</p> <p>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5)</p> <p>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2)</p> <p>*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p>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현재 시·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10.1.부터 시·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도교육청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③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시·도교육청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교육부에 보고

○ 시·도교육청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

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교육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5] 금고의 지정

○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도교육청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교육감은 교특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교육감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